EU 동물부산물 규정개정 제안

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는 2005년 10월 24일 각 회원국이 동물 부산물(Animal By-Product, ABP) 규제 적용 경험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접수하고, 향후 입법 수정안에 관한 개략적인 구상을 마련했다.

동물 부산물 규제는 각종 식중독(food-borne disease)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3년 5월 1일부터 실시해 왔다. 이 규제는 식용으로 쓰는 가축 부산물의 취급, 가공, 사용, 처분에 관한 보건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. 각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와 식품・수의청(Food and Veterinary Office)의 검역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동물 부산물 보고서는 각 회원국이 대체적으로 유럽연합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. 하지만 이 보고서는 규제의 일부를 바꾸어 규제의 적용 범주를 명확히 하고, 위험 수준에 따른 대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,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.

동물 부산물 보고서는 각 회원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유럽연합 규정을 놓고 벌이는 논쟁에 대한 기초 자료로 쓰이고, 중장기 수정안에 대한 의견서(reflection paper)로 사용한다. EU 보건 및 소비자 보호 집행위원인 Markos Kyprianou는 이번 주에 이 보고서를 농업이사회에 상정했다. 그리고 EU 집행위원회는 이 규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것이고, 이사회와 EU 의회는 2006년 말이나 2007년 초에 가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.

출처: 유럽연합 보도자료 데이터베이스

(유찬희 ruledes78@naver.com 019-251-8793 지역아카데미)